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143
----------	-------

발의연월일 : 2025. 11. 12.

발 의 자 : 서삼석 · 조계원 · 김승원
김동아 · 박용갑 · 이원택
임호선 · 윤준병 · 임미애
위성곤 · 이개호 · 안도걸
김영배 · 조인철 · 이병진
양부남 · 소병훈 · 정준호
의원 (18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양식산업발전법」을 준용하여 선박의 항행·정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 수산종자 생산업의 허가를 제한 또는 정지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양식산업발전법」은 해당 처분으로 손실을 입은 자로 하여금 그 처분을 한 행정관청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현행법은 허가를 제한 또는 정지할 수 있다는 규정을 준용하되 이로 인한 손실에 대한 보상 청구에 관한 규정은 준용하고 있지 아니한 문제점이 있음.

이에 「양식산업발전법」의 보상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행정관청의 처분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통하여 수산종자

생산업자의 재산권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7조).

법률 제 호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전단 중 “제26조 및 제41조제1항·제4항을”을 “제26조, 제41조 제1항·제4항, 제67조 및 제68조를”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허가””를 ““허가”(제67조를 준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7조(「양식산업발전법」의 준용) 수산종자생산업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양식산업발전법」 제13조제2항,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제26조 및 제41조제1항·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면허”는 “허가”로, “한정양식업면허”는 “한정수산종자생산업허가”로, “양식업”은 “수산종자생산업”으로, “면허기간”은 “허가기간”으로, “면허권자”는 “허가권자”로, “양식업권자”는 “수산종자생산업허가를 받은 자”로, “양식장”은 “수산종자생산업허가를 받은 수면”으로 본다.	제27조(「양식산업발전법」의 준용) ----- ----- ----- ----- -----제26조, 제41조제1항·제4항, 제67조 및 제68조를----- -----“허가”(제67조를 준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 ----- ----- ----- ----- ----- ----- -----.